

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

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의 안 번 호	460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8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5. 12. 31. 만료 예정임에 따라, 문화관광 플랫폼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·수탁기간 연장(재계약) 계획을 수립하고,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* 시설관리 및 운영
 - * 명칭은 평창관광센터, 별칭은 SPACE 창공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2조, 제7조
 - 「평창군 문화·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」 제11조
- 추진 필요성
 - 위탁업무가 시설관리 및 대관 등 운영 사무로,
 - 기 수탁자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·운영이 용이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: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
 - 토지: 송정리 1383-1번지 외 2필지(928.24m^2) ※ 국토교통부 소유
 - 건물: 컨테이너구조 지상2층(연면적 933.2m^2)
- 지원시설
 - 1층: 사무공간, 작은도서관, 전시공간, 회의공간, 여행자라운지 등
 - 2층: 사무공간, 창고 등
- 위치도



○ 전경 사진



마. 민간위탁기간

- 재계약 기간: 2026. 1. 1. ~ 2028. 12. 31.(3년)
- 현재 2023. 8. 1. ~ 2025. 12. 31. (2년 5월) ※ 2019. 8. 최초 위탁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기 수탁자 재계약: 사단법인 평창군관광협의회(회장 김영해)
○ 「평창군 문화·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」 제11조제2항
- 공개모집 예외 규정 적용(평창군관광협의회 위탁운영 시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민간위탁금 87,713천원(군비) ※ 2025년도 당초예산 기준
- 종사자 인건비, 공공운영비, 시설장비유지비 등

아.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(제4조의2)

-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
 - 평창군 직영도 가능하나 민간위탁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
-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
 - 주무관청의 관리와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위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음
- 경제적 효율성
 - 평창군 직영과 동일한 비용(관리인력 인건비, 운영비)이 소요 되지만, 수탁기관 사무국이 대상 시설 내 1층 사무공간에 상주하고 있어, 실질적으로는 인력과 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 군 직영의 원거리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음
-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,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
 - 한국관광공사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지역관광추진조직(DMO)으로서 관광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지님
 - 지역관광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역주도적인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이므로,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수준 높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
- 성과 측정의 용이성
 - 종합성과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용이
 - 운영관리·고객지향 활동 성과가 반영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표를 구성하고,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 부여

※ S등급 “탁월” (90점이상), A등급 “우수” (80점이상 90점미만)
재계약 진행 가능
-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-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이 용이
 - 정기적인 감사 및 결산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

자.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(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)

○ 우수(A등급): 재계약 추진 타당

- 수도권을 잇는 진부역 기능을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문화·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
-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을 통하여 (사)평창군관광협의회를 주축으로 지역관광 사업체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, 지역관광 네트워크 형성 도모

차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운영현황

- 관리인력: 3명(전담-기간제근로자 1 / 평창군 관광협의회 사무국 2-사무국장, 팀장)

- 시설운영: 09시 ~ 18시 ※ 연중 3일(신정, 구정, 추석)만 휴관

○ 관련자료

- 붙임: 관계규정 발췌

[붙임]

관계규정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“재계약” 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.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평창군 문화·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

제11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전문적·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군 소재 기관·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 제4항제5호에 따라 평창군 관광협의회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개모집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.